



제 418회 국회(정기회)
제 2 차 교 육 위 원 회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일본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등 경우에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임명 금지〉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99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및 이사 임명 절차	7
2.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 관련 해외 입법례	1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준혁의원 등 30인

나. 발 의 일 : 2024. 8. 13.

다. 회 부 일 : 2024.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며 건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음.

동북아역사재단은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기관 특성상 역대 이사장은 한국사 또는 일본 근대사를 전공한 학자들이 주로 임명되었음. 그런데 최근 서양사학을 전공하고 뉴라이트 계열의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임명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주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그러한 인사를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로 임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임.

이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안 제7조제3항 후단, 제4항 후단 신설),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인사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함임(안 제8조 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나 이사로 임명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현행	개정안
제7조(임원) ①·② (생략) ③ 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단 신설>	제7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이사장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후단 신설>	④ ----- -----, 교육부장관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이사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⑥ (생략) 제8조(임·직원의 <u>결격사유</u>)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8조(임·직원의 <u>결격사유</u> 등) ① (현

현행	개정안
<신설>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이사의 임명권자는 이사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이사를 해임하여야 한다.</u>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법인으로,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¹⁾.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임원과 이사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²⁾, 동북아역사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

1)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⑤ 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생략)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며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함.

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사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명함³⁾.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나 이사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할 것을 규정하려는 것임.

동북아역사재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이사의 직위가 가지는 위상과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역사 인식에 반하는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인사가 이사장이나 이사로 임명되어 재단의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로, 역사적 사실의 왜곡을 자행한 인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유사 입법례로, 나치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부인하는 언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이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에 존재함.⁴⁾

3) 구체적인 임명 절차는 **【참고자료 1】**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및 이사 임명 절차 참조

다만, 개정안에서 명시한 “정당화·미화”, “찬양·고무” 등 표현과 관련 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편, 교육부는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 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그러한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사실관계 다툼이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조하고,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를 보장⁵⁾하고 있는데 동 조항 신설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역사해석의 문제는 학계 등의 연구와 사회적 합의 등 공론의 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역사해석 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4

4) 【참고자료 2】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 관련 해외입법례 참조

5) 「대한민국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관련 법령**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이사장 선임 절차**

○ 교육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 임명

□ **이사 선임 절차**

○ 이사장 추천 → 외교부장관 협의 → 교육부장관 임명

<이사 선임시 내부 절차>

- ① **후보자 명단 확정:** 모집 또는 추천 등의 방식으로 **단수 또는 복수**의 이사회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고 이사회추천위원회에 심의 요청(이사장)
- ② **후보자 선정:** 이사회후보자 선정을 위한 **이사회추천위원회 개최**
 - **교육부차관(위원장),** 재단 사무총장, 외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이사장이 위촉한 외부 인사(2명) 등으로 구성
 - 위원회는 이사회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장에게 보고
- ③ **이사회후보자 추천:** 이사장은 위원회의 보고 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사회후보자를 추천
- ④ **이사 임명:** 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과 협의)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6) 자료: 교육부

붙임 1 동북아역사재단 이사 임명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원) ①재단에 임원으로서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⑤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⑥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②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당연직 이사)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 교육부차관 · 외교부차관 · 통일부차관 · 법무부차관 · 행정안전부차관 · 문화체육관광부차관 · 해양수산부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2.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3.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정관]

제5조(임원) ①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

②이사장과 상근이사 1인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임명) ①이사장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제4항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교육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이사의 추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추천위원회규정」에 의한다.**

④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차관
2. 교육부 차관
3. 외교부 차관
4. 통일부 차관
5. 법무부 차관
6. 행정안전부 차관
7.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8. 해양수산부 차관
9.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10. 한국학중앙연구원장

⑤감사는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추천위원회 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 ①위원회는 교육부 차관, 재단 사무총장, 외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이사장이 위촉한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하며, 교육부 차관이 위원장,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간사가 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원으로 이사추천이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및 소집)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간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의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이사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 ①이사장은 모집 또는 추천 등의 방식으로 단수 또는 복수의 이사후보자 명단을 확정하여, 위원회에 이사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한다.

②위원회는 제6조의 추천기준에 따라 이사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③이사장은 위원회의 보고결과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이사후보자를 추천한다.

다만, 이사후보자 중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후보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재심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추천기준) ①이사후보자의 추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북아역사정립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
2. 동북아역사정립 사업에 관한 창조적이며 전략적인 사고를 가진 인사
3. 동북아역사정립 사업을 국내외에 올바르게 소개하고 각계로부터 유기적 협조체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사
4. 동북아평화에 기여하거나 동북아문제에 정통한 인사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후보자로서 부적격한 것으로 본다.

1. 관련 법률상 자격이 제한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인사
2. 지역, 정파, 종교 등 특정 이해단체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참고자료 2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 관련 해외 입법례7)

1. 독일 - 「형법」

조문	범죄행위	법정형
국민선동죄 (제130조)	「국제형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된 나치 범죄(특정 민족, 인종에 대한 학살, 박해, 격리 등)의 공개적인 승인, 부인 등(제3항)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기타 나치 범죄의 공개적인 승인, 찬양, 정당화 등(제4항)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범죄내용을 담은 문서의 배포, 양도 등(제5항)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위헌조직 선전물 반포죄 (제86조제1항제4호)	나치의 목표를 계속 추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전물의 반포, 제조, 보관 등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2. 벨기에 - 「사회주의가 범한 집단학살을 부인, 축소, 정당화 또는 승인을 처벌하기 위한 1995년 3월 23일 법률」

조문	범죄행위	법정형
제1조	독일 국가사회주의가 범한 집단학살을 부인, 축소, 정당화 또는 승인	8일에서 1년의 구금형 및 26~5천 프랑의 벌금

7)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0. 6. 19.

3. 오스트리아 - 「금지법」(Verbotsgesetz)

조문	범죄 행위	법정형(자유형)
제3a조	나치 조직의 유지, 재건 또는 유사조직의 결성 등	10년~20년(최고 종신형)
제3b조	국가사회주의 조직 가입, 후원 등	5년~10년(최고 20년)
제3d조	국가사회주의 조직 설립, 활동 등의 촉구, 사주 등	5년~10년(최고 20년)
제3e조	국가사회주의적 목적의 범죄(살인, 강도 등) 약속	10년~20년(최고 종신형)
제3f조	국가사회주의적 목적의 범죄(살인, 강도 등) 실행	10년~20년(최고 종신형)
제3g조	제3a조~제3f조 이외의 국가사회주의적 활동	1년~10년(최고 20년)
제3h조	나치 범죄(홀로코스트, 기타 범죄)의 부인, 두둔 등	1년~10년(최고 20년)

4. 프랑스 -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조문	범죄 행위	법정형
제24조의2	-1945년 8월 8일 런던 협정에 부속된 국제 군사 재판 규정 제6조에 정의된 반인류적인 범죄의 존재 부인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범죄조직의 구성원이나 동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부인행위	1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